

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 3 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하여 응자지원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사용시설자금 : 기존주택(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)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
2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

제 4 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, 도시가스 사업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한다.

②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한다.

제 5 조(용자대상자)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용시설자금 : 수용가
2. 공급시설자금 : 일반도시가스사업자

제 6 조(용자범위) 이 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용시설자금 :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% 이내
2. 공급시설자금 :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70% 이내

제 7 조(이자율등)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용시설자금 : 연리 8%(3년 균등분할상환)
2. 공급시설자금 : 연리 8%(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)

제 8 조(용자신청절차등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가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기금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기금의 응자지급여부를 용자대상자에게 통보 및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용자토록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사업내용의 적정여부

2.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등

③기금의 응자지급 통지를 받은 응자대상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 안전 검사를 필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응자금을 요청한다.

제 9 조(지방재정법등의 준용) 은행에 대한 감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금고”는 “은행”으로 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% 달성 시까지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본문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”을 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“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”을 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